

# 20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안내

올해 정책자금 규모 3조 8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.5% 증가

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.5% 증가한다.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.3%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.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,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,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.1%포인트씩 최대 1%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.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%에서 70%로 확대되며, 개발기술사업화자금, 수출금융,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.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%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.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.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, 재고자산,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.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.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.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sbc.or.kr) '정책자금 융자도우미'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기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.

(편집자 주)

## 자금지원 안내(공통사항)

### 가. 용자대상
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중소기업으로서,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(우선지원)
  - \* 전략산업 : 녹색·신성장동력산업, 뿌리산업, 부품·소재산업, 지역전략·연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바이오산업,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중소기업으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

### 나. 용자한도

- 『개별기업 당 용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)까지이며 매출액의 150%이내에서 지원
-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

의 경우에도,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

- \*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: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(별표11)에 대한 시설자금 ②협동화·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
- \*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: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

### 다. 대출금리

-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

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(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. 청년전용창업자금, 투융자복합금융자금, 재해중소기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고정금리 적용)

-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
- 분기별 대출금리(기준금리)는 중소기업진흥공단(이하 '중진공'이라 한다) 홈페이지(www.sbc.or.kr)에 공지

\*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(공모)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,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

- \*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

\*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.1%p 금리 우대(최대 1%p, 1년간 한시 적용)

**라. 융자방식**

-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신청·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(직접대출) 또는 금융회사(대리대출)에서 신용, 담보부(보증서 포함) 대출
-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(경영안정자금(이차보전), 공고 시행전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예외)
-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·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

**마. 융자신청·접수**

- 중진공 지역본(지)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(정책자금 융자도우미)를 통한 자가진단 후,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(지)부로 신청·접수
- 시설자금(사업장 건축 및 확보, 중고설비, 외국 제작설비는 제외) 10억원 이상 신청기업은 전자거래시스템(<http://sbc.mp1.co.kr>)을 통하여 공개견적을 의뢰(기업평가 시 공개견적서 및 입찰확인서 확인)
- 중진공 지역본(지)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
-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·접수
-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(정책자금 연계)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·접수
- \* 건강진단 :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(기업애로)을 도출한 후 처방전(해법)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

**바. 융자대상 결정 절차**

- 기업평가

- 기술성, 사업성, 미래성장성, 경영능력,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(Rating)을 산정(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소공인특화자금은 별도기준으로 운영)

- \*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,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
- \*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
- 융자대상 결정
-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

**사. 융자제한기업**

-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(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)
-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-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기업
-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⑤ 휴·폐업중인 기업. 다만,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
-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
  -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 등급(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),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
  -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
  -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
-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

하는 기업(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)

-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
  - \* 업력 5년 미만 기업,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
  - \* 『소득세법』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
  - \* 『중소기업 협동조합법』상의 협동조합
  - \*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
  - \*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
  - \*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, 매출액대비 R&D투자비율이 1.5% 이상인 기업의 R&D금액, KIKO 등 환해지 파생상품 가입 피해에 따른 손실금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
- ⑧ 융자 신청일 현재,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
  - 2년 연속 매출액이 50% 감소한 기업
  -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
  -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
-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(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)
- ⑩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(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)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(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)
  - 시설자금 :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(비수도권은 50억원) 이상 (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)
  - 운전자금 :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(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

# 정책자금정보

원기업), 단, 긴급경영안정자금, 사업전환자금, 투융자복합금융자금(성장공유형 대출)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

## 아. 접수시기

- 2013년 1월 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,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(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)
- 건강진단 신청기업 : 매월 1일 ~ 10일
  - \* 경영안정자금(이차보전) 1월 접수기간 : 11일 ~ 18일
- 청년전용창업자금 : 매월 1일 ~ 5일
  - \* 재창업기업, 협동화 및 협업사업, 긴급경영안정자금, 사업전환자금, 투융자복합금융자금, 소공인특화자금, 사회적 기업,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

##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

### 1. 창업기업지원자금

#### 가. 사업목적

-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

#### 나. 융자규모 : 12,500억원

#### 다. 신청대상

- 업기업지원자금, 재창업자금,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(1인 창조기업 포함)
- (창업기업지원)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

을 준비 중인 자(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)

- (재창업)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‘연체 등’ 및 ‘공공정보’의 정보가 등재(등록 및 해제 사실)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  - \* <1. 공통사항> 마.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, ②항, ⑦항 적용에서 제외(단,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,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)

-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 - \* (재창업자 범위)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,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·경영실권자
  - \* (재창업자 요건) 실패기업의 업종이 융자제한 대상 업종(별표1)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(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)
-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
-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,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
- ④ 고의부도, 회사자금 유용,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
- ⑤ 신용미회복자(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)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

- (청년전용창업)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(별표7), 문화콘텐츠산업(별표8),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(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)

#### 라. 융자 범위

- 시설자금
  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

요되는 자금

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사업장 건축자금(토지구입비 제외), 임차보증금
-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
  - \*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
- 부지매입비 및 조경공사비(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)

#### 마. 운전자금

- 창업소요 비용,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  - 재창업자금(생산지원금융)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(계약서 등)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
  - \*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,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

#### 바. 융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3%p차감(기준금리)
  - \*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.7% 이내 고정금리
- 대출기간
  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    - \*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: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  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  - \* 재창업자금(생산지원금융)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(최대 180일)
  - 청년전용창업자금 : 시설, 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기업 당 연간 3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,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10억원,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)
  - 협동화 승인기업 : 추진주체 50억원(운전 5억원), 참가기업 45억원(운전 5억원)
    - \*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(운

전 30억원), 참가기업 30억원(운전 5억원)

- 협업사업 승인기업 : 추진주체 45억원(운전자금 5억원), 참가기업 40억원(운전자금 5억원)

- 재창업자금(생산지원금융)은 회전 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% 이내(최대 5억원)

- 청년전용창업자금 : 기업당 1억원

○ 용자방식

- (창업기업지원) 중진공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, 중진공(직접대출) 또는 금융회사(대리대출)에서 신용, 담보부(보증서포함) 대출

- (재창업) 중진공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

- (재창업) 중진공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(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(대리대출)에서 대출 가능)

\*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(신용회복위원회)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

- (청년전용창업) 중진공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교육·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(용자상환금 조정형) 또는 취급은행(우리은행)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대출

\* 용자상환금 조정형 : 정직한 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

\* 민간금융 매칭형 : 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(1월중 취급은행을 추가지정 예정)

2. 개발기술사업화자금

가. 사업목적

○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시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·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

중소기업을 육성

나. 용자규모 : 3,000억원

다. 신청대상

○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,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-Biz기업

\* 전략산업 : 녹색·신성장동력산업, 뿌리산업, 부품·소재산업, 지역전략·연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바이오산업,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

\*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

- 지식경제부,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

- 특허,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

-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

\* 신기술(NET), 전력신기술, 건설신기술, 보건신기술(HT) 등

- 국내외의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

- 『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』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

- 기업부설연구소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)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

라. 용자범위

○ 시설자금 :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○ 운전자금 :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 개척비용 등

마. 용자조건

○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중진채 조달금리에서 0.3%p차감(기준금리) 대출기간

\*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
\*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
○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2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○ 용자방식 : 중진공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할 후 직접대출

3. 신성장기반자금

가. 사업목적

○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,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

나. 용자규모 : 6,350억원

다. 신청대상

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

○ 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

\*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용자

○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

\*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용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용자

라. 용자범위

□ 시설자금

○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○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
○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
○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
# 정책자금정보

- 사업장 건축자금(토지구입비 제외), 임차보증금
  - \*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,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이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 허용
- 기타 생산성 향상,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부지매입비, 조성공사비(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)
- 무역·수출 안전시설
- **운전자금**
  -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(시설자금의 30% 이내)
    - \* 혁신형기업,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%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
    - \*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, 협동화(협업화)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, 국토해양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은 제품생산비용, 제품 개발비용,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
- 마. 융자조건
  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2%p가산(기준금리) 대출기간
  - 대출기간
    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    - \*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: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    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- 대출한도 : 기업 당 연간 30억원(운전자금 5억원)
    - \*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
    - \* 협동화 승인기업 : 추진주체 50억원(운전 5억원), 참가업체 45억원(운전 5억원)
    - \*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(운

- 전 30억원), 참가업체 30억원(운전 5억원)
- \* 협업 승인기업 : 추진주체 45억원(운전 5억원), 참가업체 40억원(운전 5억원)
- 융자방식 : 중진공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, 중진공(직접대출) 또는 금융회사(대리대출)에서 대출

## 4. 긴급경영안정자금

### 가. 사업목적

- 생경영으로 해소,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
### 나. 융자규모 : 950억원

### 다. 신청대상

- 긴급경영안정사업,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
  - (긴급경영안정사업)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으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
  - (수출금융지원사업) 융자제의 대상업종(별표1)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  - \*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(약정기간)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(단,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)

### 라. 융자범위

- 자연재해 또는 「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」(중소기업청 고시)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(재해중소기업)의 직접피해복구비용
- 일시적 경영으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으로 해소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
  - 일시적 경영으로기업
  - \* 금융기관의 Work-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
  - \* 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관리

- 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,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, 중진공 집중관리기업, 자본잠식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(자산매각, 매주주 감자 등) 추진기업
- \* KIKO 등 환해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
- \*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업
- \* 대형사고(화재 등)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
- \*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
- \* 전년동기(동월) 대비 매출액이 20%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, 전년 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
- \*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
- \* 기술유출 피해기업
- \*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
- \* 일시적 경영으로 기업의 경우, <1.공통사항> 마.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(②항 중 금융질서문란,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)

### 마. 융자조건 및 방식

#### □ 긴급경영안정사업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6%p 가산(기준금리)
  - \* 재해중소기업은 연 3% 고정금리 적용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(3년간 10억원 이내)
- 융자방식 : 중진공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 후 직접대출

#### □ 수출금융지원사업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

- 준금리에서 0.6%p 가산(기준금리)
- 대출기간 : 180일 이내
  - 수출계약기준 : 수출품 선적 후 수출한 어음 매입시 정산
    - \*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
  - 수출실적기준 :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
    - \*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
- 대출한도 : 기업당 10억원 이내
  - \*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
  - \*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: UN 및 UN산하기구,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,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 받는 기업
  - \* 글로벌강소기업 :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
  - 수출계약기준 :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(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,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)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%이내
  - 수출실적기준 :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/2 이내
    - \*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(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)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 대출 가능
- 융자방식 : 중진공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

## 5. 사업전환자금

### 가. 사업목적

- 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

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

### 나. 융자규모 : 1,700억원

#### 다. 신청대상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
  -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
    - \* 『서비스업』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“농업 및 임업, 어업, 광업, 제조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건설업”을 제외한 업종

현 영위업종(품목)	전환 진출업종
모든 업종 (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』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)	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(일부 업종 제외)

-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%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,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
- 『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

#### 라. 융자범위

- 시설자금
  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- 사업장 건축자금(토지구입비 제외), 임차보증금
  -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
    - \*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
- 운전자금
  -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- 기타 사업전환 관련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

### 마. 융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.3%p차감(기준금리)
- 대출기간
  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  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30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)
  - \*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
  - \* 업종전환의 경우 기업당 연간 40억원 이내

## 6. 투융자복합금융자금

### 가. 사업목적

-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

### 나. 융자규모 : 1,500억원

#### 다. 신청대상

- 이익공유형 대출,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
  - (이익공유형 대출)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
  - (성장공유형 대출)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(창업투자조합)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

#### 라. 융자범위

- 시설자금 :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도입,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운전자금 : 창업소요 비용,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 개척비용, 제품생산

# 정책자금정보

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## 마. 용자조건

### □ 이익공유형 대출

- 대출이자 :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
  - (고정이자)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,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
    - \*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「기준금리」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%p를 차감(대출기간 동안 고정)
    - \* 업력 5년 미만 기업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3%p 차감
    - \* 업력 5년 이상 기업(시설자금)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2%p 가산
    - \* 업력 5년 이상 기업(운전자금)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6%p 가산
  - (이익연동이자)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%
    - \* 이익연동이자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
    - \* 각 결산기 결산결과 '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' 발생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자는 면제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2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- 성장공유형 대출(대출방식 : 전환사채 인수)
  - 대출금리 : 표면금리 1%, 만기보장금리 4%
 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  - \*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: 7년 이내(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)
  -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30억원(운전자금은 10억원)

## 7. 경영안정자금(이차보전)

### 가. 사업목적

-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
## 나. 용자규모 : 5,000억원

### 다. 신청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

### 라. 용자범위

- 제품생산비용,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
-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(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 기업에 한함)

### 마. 용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금융회사가 결정한 대출금리에 연리 2.0 ~ 3.0%p를 보전한 금리
  - \* 혁신형 중소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3.0%p, 그 외 기업은 2.0%p 이차보전
  - \*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: ①전기 대비 10%이상 고용증가기업 ② 국가 또는 지자체 인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③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
- 이차보전 우대(3.0%p)는 1년간 적용(중진공에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시 1년 단위로 우대 적용)
- 대출기간 : 3년 이내(만기 일시상환)
- 대출한도 : 기업 당 연간 5억원
- 용자방식 : 중진공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금융회사(대출 취급은행)에서 대출 자금신청·접수 시 대출취급은행의 사전상담 확인서 제출

## 8. 소상공인지원자금

### 가. 사업목적

-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,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

## 나. 용자규모 : 7,500억원

- 소상공인지원자금,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
  - (소상공인지원자금) 5,000억원
  - (소공인특화자금) 2,500억원

### 다. 신청대상

- 소상공인지원자금(소상공인 일반자금,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)
  - 소상공인 :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(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), 도·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(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)
    - (소상공인 일반자금)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·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,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, 나들가게,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,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
    - (소상공인 특화자금)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, 성장유망형으로 선정된 소상공인, 장애인기업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
      - \* 소상공인지원자금 용자제의 대상 업종(별표15)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
- 소공인특화자금
  -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
    - \*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의 대상 업종(별표1)에 해당하는 기업은 용자대상에서 제외

### 라. 용자범위

- 소상공인지원자금(소상공인 일반자금,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)
  -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
- 소공인특화자금
  - 시설자금 :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, 사업장 건축(토지구입비 제외) 및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, 임차보증금
  - 운전자금 :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마. 용자조건

- 소상공인지금(소상공인 일반자금,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)
  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2%p 가산(기준금리)
    - \* 재해 소상공인,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% 고정금리 적용
 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  - \*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- 대출한도
    - (소상공인 일반자금, 소상공인 특화자금) 최대 7천만원
    - \* 나들가계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최대 1억원
  - 상환방식
    -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(또는 1개월)마다 균등 분

- 할 상환하고, 30%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
  - \*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(또는 1개월)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, 30%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
- 대출 취급은행(19개)
  - 국민·기업·신한·우리·외환·한국씨티·하나·부산·대구·광주·전북·경남·SC제일·제주은행·농협중앙회·저축은행중앙회·수협중앙회·새마을금고·신협중앙회
- 소공인특화자금
  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2%p 가산(기준금리)
 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-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2억원(운전자금은 1억원)

- 대출취급 기관 : 중소기업진흥공단
- 바. 용자절차
- 소상공인지금(소상공인 일반자금,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)
    - 신청·접수 :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
      - \*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
    - 신용보증서 발급 : 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
      - 신청인의 신용·재정상태·경영능력·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
      - \*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
    - 자금대출 : 대출 취급은행
      - 신용 평가, 담보 감정,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

[ 신청·접수 및 문의처 ]

지역본(지)부 (소재지)	전 화	지역본(지)부	전 화	지역본(지)부	전 화
서울 (목동)	02)6678-4127, 37	충북 (청주시)	043)230-6811~2	전남 (무안군)	061)280-8000
서울동남부 (서초구)	02)2156-2222~3	충북북부 (충주시)	043)841-3600	전남동부 (순천시)	061)724-1056
서울북부 (여의도)	02-769-6825, 26	전북 (전주시)	063)210-9900	부산 (사상구)	051)630-7400
인천 (연수구)	032)450-0521~4 0531~4	전북서부 (군산시)	063)460-9800	부산동부 (해운대구)	051)712-9670
인천서부 (서구)	032)450-0560	대구 (대구시)	053)601-5300	울산 (울산시)	052)703-1100
경기 (수원시)	031)259-7911~5, 7921~5	경북 (구미시)	054)476-9321~9	경남 (창원시)	055)212-1350
경기동부 (성남시)	031)628-6888	경북동부 (포항시)	054)223-2047~8	경남동부 (김해시)	055)310-6600
경기서부 (시흥시)	031)496-1083~4	경북남부 (경산시)	053)212-3300~01	경남서부 (진주시)	055)756-3060
경기북부 (고양시)	031)920-6700	강원 (춘천시)	033)259-7600	제주 (제주시)	064)751-2053~7
대전 (대전시)	042)866-0114,23	강원영동 (강릉시)	033)655-8870		
충남 (천안시)	041)621-3687	광주 (광주시)	062)600-3000		